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411 견책처분취소청구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전라북도 교육감

[Redacted]

변 론 종 결 2016.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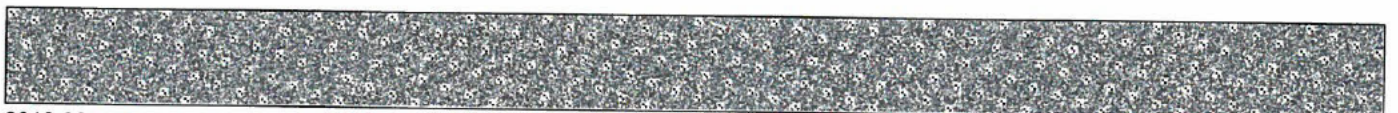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10. 전라북도 고창동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redacted]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가 다음과 같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교직원의 권리 침해(제1사유)

원고는 2014. 3. 1.부터 2015. 3.경까지 약 26종, 64건의 목공작업을 하면서 스포츠 강사, 공익요원, 태권도 순회코치 등 교직원을 20~30여회 동원하였고, 목공작업을 할 때마다 민성기(시설관리 7급)와 함께 수시로 작업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 책무 태만(제2사유)

원고는 목공작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작업실을 만들어 목재를 쌓아놓는가 하면 전기톱을 방치하여 학생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어 학교장으로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해야 할 책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2015. 8. 1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의 건강과 예산절감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목공작업을 한 것이고,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목공작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의 통행이나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목재 및 전기톱을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였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점, 군산동초등학교의 교감, 직원, 학부모들까지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제1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 제8호증의 1,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민성기, 전국봉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학교 예산절감 등의 목적으로 신발장, 물품보관함, 책장, TV 받침대 등 학교시설 및 교구 제작을 위한 목공작업을 한 것이고, 원고의 목공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학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함께 목공작업을 한 스포츠 강사 전국봉, 태권도 순회코치 두상진, 공익요원 이윤호, 시설관리 공무원 민성기는 "학생 및 학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원고의 목공작업을 돕게 된 것이고, 결코 교장인 원고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의 목공작업에 가장 많이 참여한 시설관리 공무원 민성기는 이 법정



에 출석하여 "목공작업이 힘이 들기는 하였으나, 학교시설을 보수하거나 교구를 만드는 일은 증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였고, 원고와 증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여서 원고가 교구제작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목공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전국봉은 "목공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원고의 부탁으로 물건을 들거나 망치질을 하는 정도로 작업에 참여하였고, 수업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위 증언들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학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제2사유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목공작업 장소, 장비보관 등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교실과 다소 떨어진 별관 2층 강당 출입구 옆 빈 공간을 목공작업실로 사용하였고, 목재보관틀을 만들어 그 안에 차곡차곡 목재를 쌓아서 보관하여 왔던 점, ② 원고가 목공작업에 사용한 기계는 전기톱이 아니라 소형 슬라이딩 각도기이고, 목공작업을 한 후에는 안전 덮개를 씌우고 전원을 빼놓은 상태로 보관하여 왔던 점, ③ 증인 민성기는 "목공작업 도중 점심을 먹게 되면 교대로 가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장에 누군가는 항상 있었고, 슬라이딩 각도기는 초등학생이 작동하기 쉽지 않은 기계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전국봉은 "목공작업 후에는 작업도구를 정리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 항상 학생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고, 공구관리에 신경을 썼다"고 증언한 점, ④ 위와 같은 목재 및 장비의 보관상태에 비추어 볼 때, 목재가 밖으로 흘러나와 무너지거나 학생들이 장비를 만지고 작동시킬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학교장으로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해야 할 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사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의 점을 학교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시설의 안전한 관리·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험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제2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2)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방 창 현 

판사


한진희

한 진 희 

판사

최정윤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방 창 현 



정본입니다.

2016. 8. 26.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유승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